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 1. 27 규칙 제66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하는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선정기준, 배점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6. 기타 시장이 수탁자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4조(운영시간)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평일 08:00부터 20:00까지(1일 12시간으로 운영함)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직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소대상 및 자격) 어린이집의 입소자격은 용인시 소속 직원의 자녀로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하 “입소아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입소절차) ①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구청장)은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입소승인 결정통지서를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소아동의 선발) ① 입소아동의 선발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각 연령대별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한 때의 추가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퇴소)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소

시킬 수 있다.

1. 직원이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때
2. 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
3. 아동이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
4. 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할 때
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9조(보육교사 등)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둔다.

② 보육교사는 법 제21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탁자와 협의 후 수탁자가 임명하되 그 결과를 시장(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육교사로 임명할 수 없으며,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을 해촉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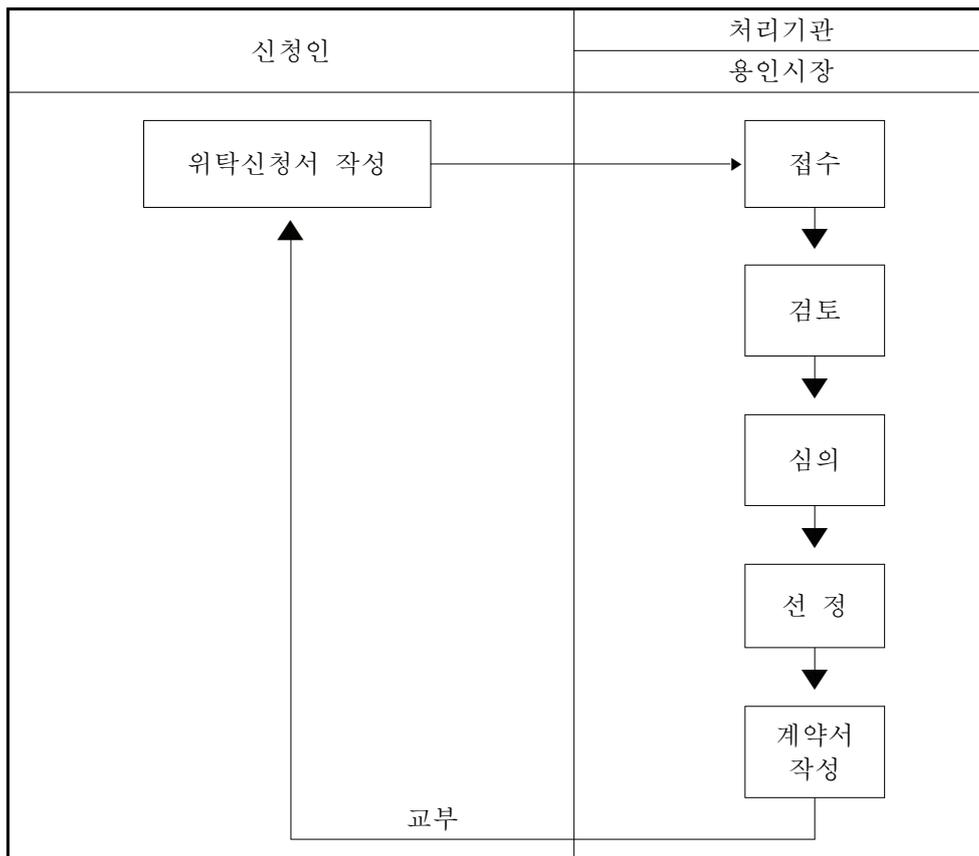
④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보수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기타 세부첨부서류는 공고문 참고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시 설 명 칭 :

소 재 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한자:)

원 장 성 명 : (한자:)

위 탁 기 간 :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② 법인·단체명
	③ 주소	(전화:)	
	④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⑥ 어린이집의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⑦ 변경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용인시장 귀하</p>			
※ 구비서류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별지 제5호서식]

입소승인 결정통지서

아 동	성 명		성 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 호 자	성 명	부 :	소 속 (직 업)	부 :
		모 :		모 :
	연 락 처			
결 정 사 항		입소예정일 :		
		어린이집명 :		
<p>상기 아동을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용 인 시 장</p>				